**급여 보호 프로그램(PPP)의 대출금 탕감 신청서**

**2가지 신청서 : “약식 신청서”와 “수정된 정식 신청서”**

<<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.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.>>

급여 보호 프로그램(PPP) 유연성법 (“Flexibility Act”)이 2020년 6월 5일에 통과되면서, 중소기업청(SBA)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몇 가지 규칙들이 수정되었습니다. 개정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차용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. 초기 PPP 대출 프로그램에 따르면 차용인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금액을 사용했어야 하나, 그 기한이 24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다만, 2020년 6월 5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기존의 “8주 사용기간”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. 급여가 아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또한, 대출금의25% 가 아닌 40% 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이 8주건 24주건, 그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0개월 안에 PPP 대출금 탕감을 신청해야만 합니다. 탕감을 받지 못한 금액은 갚아야 할 대출금으로 남게 됩니다. Flexibility Act에 따르면, 2020년 6월 5일 이후에 승인된 PPP 대출금의 대출 상환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, 이자는 연중 1%로 유지됩니다. 2020년 6월 5일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경우, 대출기관과 차용인의 동의 하에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Flexibility Act 실행의 일환으로, 중소기업청(SBA)은 2020년 6월 5일 새로운 버전의 대출금 탕감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. (1) 간결한 “약식(EZ) 버전” 신청서, (2) 차용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정된 정식 대출금 탕감 신청서.

1. **“EZ” 약식 신청서** –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금 탕감 신청서 (3508EZ) 는, 정식 신청서에 비해 계산과 서류 제출을 덜 요구합니다. 이 약식 신청서를 사용하시려면 차용인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
* 차용인은 개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이거나 독립사업자여야 하며, PPP 대출을 신청할 당시 직원이 없어야 한다; 또는
* 차용인은 직원들의 시급이나 연봉을 25%이상 감봉한 적이 없어야 하며, 2020년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비해 직원들 수나 노동 시간을 줄인 적이 없어야 한다. (다만, 차용인이 2020년 2월 15일에 직원이었던 개인을 재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, 빈 자리를 메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그 결과로 직원들 수가 줄어든 경우, 그리고 차용인이 직원의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시 원상태로 늘려주려 했으나 직원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이다); 또는
* 차용인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비즈니스 활동이 저하되었으나, 직원들의 시급이나 연봉을 2020년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의 기간과 비교하여 25% 이상 줄이지 않았어야 한다.

위에 명시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, 매우 간단한 양식인 SBA Form 3508EZ 을 작성하셔서 대출 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여기를 클릭하세요:

* [약식 신청서](https://www.sba.gov/sites/default/files/2020-06/PPP%20Forgiveness%20Application%203508EZ%20%28%20Revised%2006.16.2020%29.pdf)
* [약식 신청서 (설명서)](https://www.sba.gov/sites/default/files/2020-06/PPP%20Loan%20Forgiveness%20Application%20Form%20EZ%20Instructions%20%28Revised%2006.16.2020%29-508.pdf)

1. **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정식 신청서**

만약 차용인이 약식 신청서를 사용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, 2020년 6월 16일에 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의 정식 버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 초기의 정식 신청서 (SBA Form 3508)는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었으나, 이번에 수정된 정식 신청서는 아직 한국어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여기를 클릭하세요:

* [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정식 신청서](https://www.sba.gov/sites/default/files/2020-06/PPP%20Loan%20Forgiveness%20Application%20Instructions%20%28Revised%206.16.2020%29-508.pdf)
* [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정식 신청서 (설명서)](https://www.sba.gov/sites/default/files/2020-06/PPP%20Loan%20Forgiveness%20Application%20Instructions%20%28Revised%206.16.2020%29-508.pdf)

일단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가 접수되면, 대출 기관은 법적으로 60일 안에 차용인에게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.

이 칼럼을 쓴Cheryl Lee (이승영)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전 회장입니다. 문의: [kabawaboard@gmail.com](mailto:kabawaboard@gmail.com) / [clee@helsell.com](mailto:clee@helsell.com).